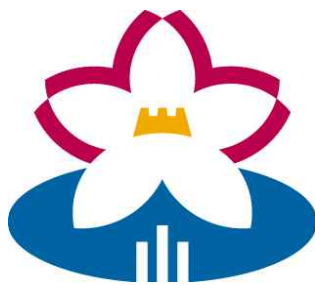

「2026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사 업 지 침



성 남 시
[고 용 과]

목 차

I. 사업목적 및 개요	1
1. 사업목적	2
2. 용어정리	2
3. 사업개요	5
II. 신청 및 지급	9
1. 신 청	10
2. 심 사	16
3. 지급결정 및 지급	20
4. 이의신청	20
III. 사후관리	21
1. 중복수혜 조회	22
2. 환 수	22
3. 체납관리	23
IV. 서 식	24
V. 참고자료	45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46
2. Q & A	47
3. 참고법령	55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 준(2025년)	변 경(2026년)	비 고																																										
소득 및 재산 기준	○ 선정기준 ◦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 중위소득 값을 기준으로 120% 이하로 환산하여 적용 (고시 제2025-135호)																																										
	<table><tr><td>구분</td><td>1인가구</td><td>2인가구</td><td>3인가구</td><td>4인가구</td><td>5인가구</td><td>6인가구</td></tr><tr><td>100%</td><td>2,392,013</td><td>3,932,658</td><td>5,025,353</td><td>6,097,773</td><td>7,108,192</td><td>8,064,805</td></tr><tr><td>120%</td><td>2,870,416</td><td>4,719,190</td><td>6,030,424</td><td>7,317,328</td><td>8,529,830</td><td>9,677,766</td></tr></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table><tr><td>구분</td><td>1인가구</td><td>2인가구</td><td>3인가구</td><td>4인가구</td><td>5인가구</td><td>6인가구</td></tr><tr><td>100%</td><td>2,564,238</td><td>4,199,292</td><td>5,359,036</td><td>6,494,738</td><td>7,556,719</td><td>8,555,952</td></tr><tr><td>120%</td><td>3,077,085</td><td>5,039,150</td><td>6,430,843</td><td>7,793,685</td><td>9,068,062</td><td>10,267,142</td></tr></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 재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산기준 준용 - 일반재산 4억원 이하	◦ 재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산기준 준용 - 일반재산 4억원 이하																																												
생활 임금	○ 지원액: 성남시 생활임금 97,360원 (시급 12,170원 / 1일 8시간 97,360원)	○ 지원액: 성남시 생활임금 100,160원 (시급 12,520원 / 1일 8시간 100,160원)	•성남시 2026년 기준 생활임금 변경 (고시 제2025-299호)																																										
신청 자격	○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성남시 주민등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 주민등록자	•기존 지침 상 불명확했거나, 상충됐거나, 미비했던 내용 및 서식 일괄 정비 (그 중 주요 내용만 표시)																																										
	○ 입원(검진)일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검진)일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불가)																																											
지원 기간	○ 사업종료 시까지 총 30일 이내(30일 초과 시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연 1일 지원 가능)	○ 사업시행일(2021.10.25.)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누적 30일 이내(30일 초과 시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에 한해 연 1일 지원 가능)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규정	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의2(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②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③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및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사업 시행	2021. 10. 25.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① 신청자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유사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등 ② 선정기준 - 소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table><tr><td>구분</td><td>1인가구</td><td>2인가구</td><td>3인가구</td><td>4인가구</td><td>5인가구</td><td>6인가구</td></tr><tr><td>100%</td><td>2,564,238</td><td>4,199,292</td><td>5,359,036</td><td>6,494,738</td><td>7,556,719</td><td>8,555,952</td></tr><tr><td>120%</td><td>3,077,085</td><td>5,039,150</td><td>6,430,843</td><td>7,793,685</td><td>9,068,062</td><td>10,267,142</td></tr></table> - 재산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산기준 적용(2026년 4억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80%)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③ 신청기한: 퇴원일(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지원 내용	① 지원 액: 성남시 생활임금(2026년도 기준, 12,520원 / 1일 8시간 100,160원) ② 지원기간: 1인당 연간 13일 이내(입원치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사업시행일(2021.10.25.)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누적 30일 이내 지원 (30일 초과 시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연 1일 지원 가능)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일·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지원 체계	<table><tr><td>① 병원 입·퇴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td><td>➔</td><td>② 지원신청</td><td>➔</td><td>③ 심사·결정</td><td>➔</td><td>④ 지급</td><td>➔</td><td>⑤ 사후관리</td></tr><tr><td>노동자</td><td></td><td>노동자→시</td><td></td><td>시</td><td></td><td>시→노동자</td><td></td><td>시</td></tr></table> ① 입원치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정신적·육체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②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방문, 등기우편) ③ 심사 및 결정: 신청 자격 및 지급 여부 심사, 심사 결과 통보 ④ 지급: 대상자 수령 신청 통장으로 현금 지급(계좌이체) ⑤ 사후관리: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① 병원 입·퇴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② 지원신청	➔	③ 심사·결정	➔	④ 지급	➔	⑤ 사후관리	노동자		노동자→시		시		시→노동자		시			
① 병원 입·퇴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② 지원신청	➔	③ 심사·결정	➔	④ 지급	➔	⑤ 사후관리														
노동자		노동자→시		시		시→노동자		시														
전 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 오픈마켓 탭																					
소요 자원	시비 100%																					

I .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2 용어정리

3 사업개요

I.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치료 받는 기간 중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을 위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 지원

2. 용어정리

가. 가구원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조회에는 외국인 가구원은 확인 불가하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포함 가능하며, 법률혼만 인정하고 사실혼은 불인정함.

(증빙서류: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고신고 사실증명) 등)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자(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 의하여 가구원 제외 가능)

-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는 사람(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사람
-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
- (8) 가족관계 해체 시

* 증빙서류

제외 사유	증빙서류
(1) 군복무	군입영 사실확인서
(2) 해외이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복역	수용증명서
(4) 보장시설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을 증명하는 서류
(5)~(6) 실종 및 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7) 재외국민	재외국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가족관계 해체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서식 제16호)

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의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중위값을 기준으로 120% 이하

다. 노동취약계층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2조제4호)

-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 노무제공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등 성별, 연령별,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취약 노동자

라. 근로소득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연령은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를 따른다.

【 주요 근로소득자 예시 】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에 해당.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르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따르면,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정의함.

● 임시근로자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었거나, 고용계약기간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비자발적·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를 임시근로자로 분류하고, 임시근로자는 회사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상여금·각종수당에서 제외된 경우를 포함함.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의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에 의한 “노무제공자”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플랫폼노동자**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일감을 얻고 노동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고용 형태로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종이 포함됨.

마. 사업소득자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는 자(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등)

바.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성납시 유급병가비 지원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사.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아.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하여,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 검진을 제외한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말함.

자. 성남시 생활임금

-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거 성남시 생활임금을 결정함.
※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성남시 고시 제2025-299호): 시급 12,520원 (1일 8시간 100,160원)

3. 사업개요

가. 근 거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의2 등

나. 기본 방향

-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한함.
- 지원 가능 일수는 1인당 연간 13일 이내(입원 13일 또는 입원 12일, 건강검진 1일), 사업시행일(2021.10.25.)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누적 30일 이내(30일 초과 시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연 1일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 예 시 】

- ① 2025. 12. 26. ~ 12. 30.(5일) 입원 시 ⇒ 2025. 12. 30. ~ 2026. 6. 29. 기간 중 신청 가능
 -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2025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실제 입원 기간 날짜 기준)
- ② 2025. 12. 28. ~ 2026. 1. 2.(6일) 입원 시 ⇒ 2026. 1. 2. ~ 2026. 7. 1. 기간 중 신청 가능
 - 신청 연도와 상관없이 2025년 입원 기간인 4일간은 2025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2026년 입원한 2일간은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 지원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 실제 입원기간(일반건강검진일) 날짜 적용
 - 2025년도 기준: 1일 8시간 97,360원 / 2026년도 기준: 1일 8시간 100,16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의료비 지원이 아닌 1일 생계비 지원이므로, 입원과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날짜가 겹칠 경우 1일만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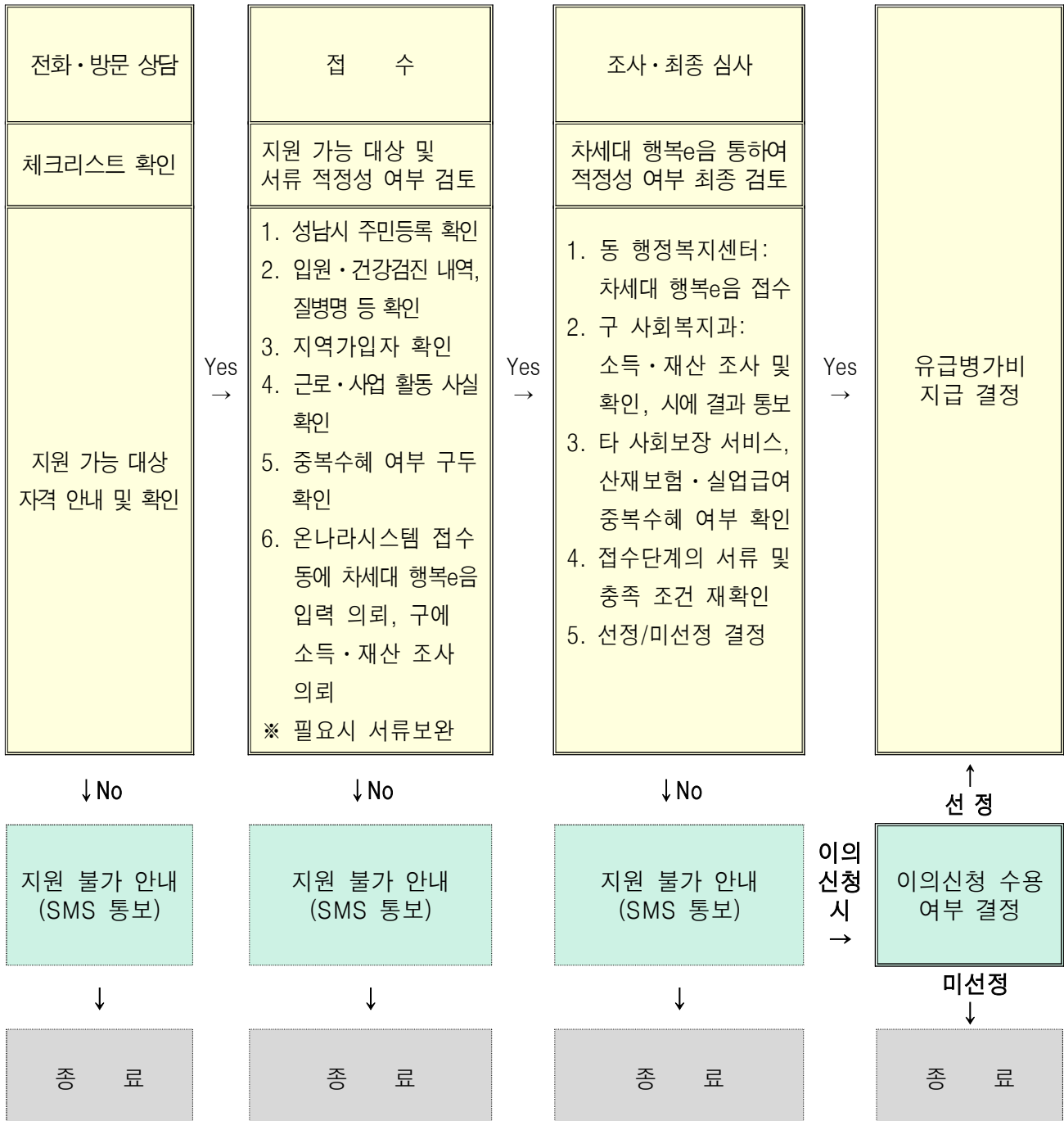
다. 지원 체계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대리인)	● 의료기관(입원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신청서류 원본 발송)]
↓		
접 수	시 담당자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서 접수 및 지원 관련 안내
↓		
심 사	시·구·동 담당자	● 시(고 용 과): 신청서류 스캔 및 온나라시스템 공문 접수, 차세대 행복e음 입력(동) 및 소득·재산 조사(구) 협조 요청 ● 동(복 지 담 당): 공문 접수 차세대 행복e음 입력(신청서류 스캔본 첨부) ● 구(사회복지과): 차세대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조회 및 복지급여 수급 여부 확인 등을 입력, 시(고용과)에 결과 통보 ● 시(고 용 과): 소득·재산 기준 및 각종 중복수혜 여부 확인, 입원 기간·검진일, 질병명 등 재확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근로(사업)조건 등 심사
↓		
지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시 담당자	● 지원 결정 ● 지원 대상자 여부 문자(SMS) 발송 통보 ● 계좌이체
↓		
신청서 보관 및 지급 이력 관리	시 담당자	● 신청서 보관, 신청자 정보 DB 입력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 통해 소득 및 재산 조사

라. 절차 단계별 확인 내용

○ 확인 절차



○ 접수 및 지급 절차

절 차	내 용
접 수	○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신청 가능 여부 안내) - 신청서(소득·재산 조사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등 포함) - 성남시 주민등록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여부 확인 - 입원: 입원기간 및 질병명(미용, 성형, 출산, 요양 제외) 표기 -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중복수혜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 근로(사업)조건 충족 여부 확인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등 근로활동 확인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사업장 유지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 모든 신청서류가 빠짐없이 제출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간주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은 사본 제출 인정) - 접수 완료 후라도 지원 확정자 심사 시 소득재산 조사 및 산재보험·실업급여 등 중복조치에서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서류 스캔 후 온나라시스템 비전자문서 등록, 스캔본 첨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의뢰, 구 사회복지과에 조사 의뢰
심사·결정	○ 심사 - 소득·재산 조사 확인: 구 사회복지과 결과에 따라 차세대 행복e음 확인 - 성남시 주민등록, 입원기간·검진일자, 질병명(미용, 성형, 출산, 요양 제외), 공단 일반 건강검진 적정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중복수혜, 근로(사업) 조건 충족 등 신청 서류 재확인 - 중복수혜 확인: 차세대 행복e음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지원 중복 여부 재확인 ○ 결정: 선정 여부 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와 입금 예정일 SMS 통보
지 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토·일·공휴일 제외)
사 후 관 리	○ 신청서 보관, 신청자 정보 DB 입력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II. 신청 및 지급

1 신청

2 심사

2-1. 자격심사

2-2. 소득·재산 조사

2-3. 근로·사업 활동 사실 확인

2-4. 중복수혜

3 지급결정 및 지급

4 이의신청

II. 신청 및 지급

1. 신청

가. 신청기준

- 신청자격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 주민등록자
 - 입원기간·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능자 신청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 제외자
 - 외국 국적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포함된 월 중 중복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 생계급여는 월 단위,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므로
신청 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 접수 당시 사망자(단, 접수 후 사망한 경우는 지원)
- 선정기준
 - 소득 : 2026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 재산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산기준 적용(2026년 4억원 이하)
 -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80%)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은 사본 제출 가능)

- 신청주체: 본인신청 또는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③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제출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준용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 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수령주체: 본인
 -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타인 계좌 입금 가능[서식 제17호]

나. 신청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

【 예 시 】

- 퇴원일부터 신청 기한 산정 예

입원일	퇴원일	신청 가능일
2026.2.6.~2.11.(6일)	2월 11일	2026년 2월 11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 신청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의 신청기한 산정 예(그다음 평일까지 신청 가능)

입원일	퇴원일	신청 가능일
2026.4.17.~4.19.(3일)	4월 19일	2026년 4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 (신청종료일이 10월 18일로 토·일·공휴일인 경우)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 항목별 사례 】

- ① 이전 신청 시 선정되어 지급된 자가 새로운 건으로 재신청했을 경우
 - 이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 ▶ 성남시 주민등록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 등 지원 가능 대상 자격 재확인
 - ▶ 소득·재산 조사 생략 가능: 이전 신청 시 조사된 소득·재산 내용으로 같음
단, 가구원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 다시 실시

- 이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시
 - ▶ 성남시 주민등록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 등 지원 가능 대상 자격 재확인
 - ▶ 새로운 신청 시점에서 소득·재산 조사 다시 실시

【 예 시 】

입원일	1차 신청일	1차 결과	공단 일반건강 검진일	2차 신청일	소득·재산 조사
2026.1.1.~1.5. (5일)	2026년 1월15일	선정	3월31일	2026년 7월 14일 이전	미실시 (6개월 미경과)
				2026년 7월 15일 이후	실시 (6개월 경과)

② 가구원 2명 이상 동시 신청할 때

- 행복e음에 가구원 2명 이상 동시 접수 불가로 가구원A 먼저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후 완결 처리(단, 가구원 A, B 모두 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중복수혜 여부 조회는 가능)

③ 가구원 A, B가 순차적으로 신청한 경우

- 가구원A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구원 B가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단, 가구원 변동 시 재조사)
- 가구원A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가구원 B가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실시

다. 신청 등록

- 시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온나라시스템에 비전자 문서 등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자료 출력하여 신청서류 등과 함께 스캔
- 스캔서류 첨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및 구 사회복지과(통합조사관리2팀) 조사 의뢰

라. 제출서류

①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 포함)

② 기준 확인을 위한 민원인 제출 또는 공무원 확인 서류															
②-1.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 주민등록자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											
▶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지급 불가능 ▶ 신청 후 심사·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성남시 관내 타구로 전출 시에는 지급 가능															
②-2.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입원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원(검진)기간</th> <th colspan="2">건강보험자격</th> <th>지급가능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26.2.1.~2.5.(5일)</td> <td>2026.2.1.~2026.2.3.(3일)</td> <td>지역가입자</td> <td>3일</td> </tr> <tr> <td>2026.2.4.~2026.2.5.(2일)</td> <td>직장가입자</td> <td>불가</td> </tr> </tbody> </table>					입원(검진)기간	건강보험자격		지급가능일	2026.2.1.~2.5.(5일)	2026.2.1.~2026.2.3.(3일)	지역가입자	3일	2026.2.4.~2026.2.5.(2일)	직장가입자	불가
입원(검진)기간	건강보험자격		지급가능일												
2026.2.1.~2.5.(5일)	2026.2.1.~2026.2.3.(3일)	지역가입자	3일												
	2026.2.4.~2026.2.5.(2일)	직장가입자	불가												
②-3. 근로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로 소득자	내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필수 택1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제5호)	○												
		기타(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												
※ 근로·사업소득자의 경우 행복e음에서 소득이 “0” 으로 조회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필수 제출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제5호)(고용된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 ▶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회사 발급 서류 제출(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가능)
- ▶ 일용근로자 등이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제5호) 미구비 시 급여 지급 통장 등 근로소득 증빙서류 제출
-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 변경 시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간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자⇒근로소득자 간 변경되어도 지원 가능
 - 특수상황에 의한 근로상황 시 근로일수 적용 : 신청자의 직장 근로상황에 따른 일시적 방학, 휴업 등으로 일을 쉬고 있는 경우(예: 문화원, 학교 등)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근로 확인 처리

②-4. 입원치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입원치료	의료기관 발급 서류(입원기간 및 질병명 명시)	○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	

- ▶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및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요약지 등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

②-5. 신청자 및 가구원의 재산 확인 서류(해당자) ※ 본인 또는 가구원 소유인 경우 불필요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주거지 및 사업장 포함 부동산 일체)		○	
택1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 제10호)	○	
	실거주 확인서(서식 제11호)		
	전대차 관계 확인서(서식 제12호)		

- ▶ 자가 주택·사업장이 아닌 경우
 - 신청자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주거지 및 사업장 포함 부동산 일체)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종

②-6. 가족관계 단절 시(해당자)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서식 제16호)	○	
▶ 신청자 가구원 중 실제 가족관계이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을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인정해 주도록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 <예 시> 예시1) 신청자가 이혼 후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와 거주하여 신청자와는 연락이 단절된 경우 예시2)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나 배우자 행방이 묘연 또는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			
②-7. 기 타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17호)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통장 입금 불가 시)	○	

※ 타 사회보장서비스 신청·심사 중인 경우 행복e음에 접수 불가하므로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후 심사 중인 사회보장서비스 종료 후 입력

마. 신청 종결

- 신청 이후 지급결정이 통보되기 전에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취하 요청 등 지급신청 종결 필요 시
- 30일 이내 원본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결 가능, 추후 보완 시 재등록 가능

바.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 및 원본은 시에서 보관

2. 심 사

2-1. 자격심사

-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 주민등록** 여부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여부
(임의계속가입자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불가)
 - ※ 성남시 주민등록자 및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조회 자료 활용
-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예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 요약지,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은 제외
- 대상 질병 범위: 미용, 성형, 요양, 출산 목적 입원은 지원 제외
(장기기증 공유자도 입원 시 지원 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검진 확인
- 근로소득자 근로 여부 및 사업소득자 사업장 유지 여부 확인
 - 근로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포함 3개월간 45일 이상 유지(휴업 고려하지 않음)

2-2. 소득 · 재산 조사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시 지급대상자 확정

구 분	세부내역																					
기본 원칙	▶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합 - 가구원: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 신청인의 가구원이 외국인일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가구원으로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외국인 가구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할 경우 포함 가능 ▶ 방법: 통합조사 담당이 실시한 행복e음으로 조회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적용하되 신청인이 현재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정 적용 가능 - 본인이 제출한 공적서류(예: 소득금액증명 등)에 의해 최근 소득 반영을 원할 경우 적용 - 행복e음 소득 조사에서 “0” 으로 나올 경우,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로 신고한 현재 소득 반영 ※ 일용근로자는 1년 평균 월소득 반영																					
소득	▶ 기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table><tr><td>구분</td><td>1인가구</td><td>2인가구</td><td>3인가구</td><td>4인가구</td><td>5인가구</td><td>6인가구</td></tr><tr><td>100%</td><td>2,564,238</td><td>4,199,292</td><td>5,359,036</td><td>6,494,738</td><td>7,556,719</td><td>8,555,952</td></tr><tr><td>120%</td><td>3,077,085</td><td>5,039,150</td><td>6,430,843</td><td>7,793,685</td><td>9,068,062</td><td>10,267,142</td></tr></table> ▶ 내용: ‘소득’ 은 실제소득만 의미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②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④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당, 연금, 급여 등), 부양비, 양육비 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재산	▶ 기준: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시가표준액 합산액이 4억원 이하 ▶ 내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일반재산 ① 토지, 건축물, 주택 ②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③ 항공기 및 선박 ④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⑤ 입목재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방법 ① 주거지, 사업장 등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상 금액의 80% 산정 • 본인 소유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과 시세 간 차이를 반영 ② 본인 소유 주택 등 공시지가 적용 • 본인 소유 주택 1채를 임대(전세)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임차(전세) 거주시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 적용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족, 친척, 지인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는 경우에도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 적용 •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각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합산하여 재산액 산정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고시원, 지인 집 등에서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 시 등)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 제10호) - 고시원, 여인숙 등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서식 제11호) -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에 곤란한 경우: 전대차 관계 확인서(서식 제12호) - 신청자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나 신청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서식 제16호) ③ 기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납입금액만 인정
--	---

2-3. 근로·사업 활동 사실 확인

가. 근로소득자

-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 사실 확인 관련 서류에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여부 확인

나. 사업소득자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사실 확인 관련 서류에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여부 확인
 - 사업장 유지 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확인(휴업은 고려하지 않음)
- ※ 폐업일을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근로소득자의 근로활동 인정 조건 적합 예시 】

- 신 청 일: 2026. 5. 2.
- 입원기간: 2026. 4. 15. ~ 2026. 4. 18.(4일간)
- 근로기간: 2026년 1월에 15일간 근로 + 2026년 2월에 10일간 근로 + 2026년 3월에 5일간 근로 → 3개월간 총 30일 근로
- 근로활동 인정 조건 적합 여부: 적합(○)
- 적합 사유: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일수 충족

【 근로소득자의 근로활동 인정 조건 부적합 예시 】

- 신 청 일: 2026. 5. 2.
- 입원기간: 2026. 4. 15. ~ 2026. 4. 18.(4일간)
- 근로기간: 2026년 1월에 5일간 근로 + 2026년 2월에 10일간 근로 + 2026년 3월에 5일간 근로 → 3개월간 총 20일 근로
- 근로활동 인정 조건 적합 여부: 부적합(X)
- 부적합 사유: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일수 미충족

【 사업소득자의 사업활동 인정 조건 부적합 예시 】

- 신 청 일: 2026. 5. 2.
- 입원기간: 2026. 4. 7. ~ 2026. 4. 10.(4일간)
- 사업자등록: 2026. 3. 1.
- 사업활동 인정 조건 적합 여부: 부적합(X)
- 부적합 사유: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일수 미충족

2-4. 중복수혜

가. 타 사회보장 서비스 중복 지원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차세대 행복e음에서 입원,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의 생계급여 지급 여부 등 확인

나. 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차세대 행복e음에서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소득 항목 여부 조회

3. 지급결정 및 지급

가. 대상자별 자격 확인 및 지급결정

- 지원 기준 및 자격 확인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확정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접수 이후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차세대 행복e음에서 소득·재산 조사 불가 → 종결처리

나. 지급결정 통보

- 방법: SMS 통보(문자 발송), 지급(미지급) 결정 결과 즉시 통보
- 내용: 신청결과, 지급금액, 지급시기,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절차 안내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 지급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소득·재산 조사, 근로·사업 사실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 가능
- ※ 지급결정 시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의 생계급여 수혜 여부를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 급여 지급 시점에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월 중복지급 여부 최종(추가) 확인

다. 지원금액

- 입원: 입원일수×100,16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100,160원
- ※ 1일 100,160원(12,520원×8시간)
- ※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성남시 고시 제2025-299호): 시급 12,520원

4. 이의신청

가. 신청사유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내역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나.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

- 기한: 지급결정 통지(SMS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 방법: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서[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등기우편의 경우 기한일 내 소인 분까지 유효)

다. 이의신청 처리절차

- 신청자가 고용과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접수한 고용과는 선정 기준 등을 적용하여 자체 심의하여 30일 이내에 처리

III. 사후관리

1 중복수혜 조회

2 환 수

3 체납관리

Ⅲ. 사후관리

1. 중복수혜 조회

가. 목 적

- 지원대상자가 신청 절차 및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국가·타 자치단체의 소득보장형(생계형)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의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를 위함

나. 중복수혜 조사

-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와 시민으로부터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경우는 산재보험,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의 생계급여 등 중복수혜 조회 실시

2. 환 수

가. 환수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 사후관리를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 전액 환수
예시1) 증명 서류 위조 및 허위 서류 발급 등
예시2) 지원 대상자와 사업주의 담합에 의해 지원액의 일체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갖는 행동 등 부당하게 수급 혜택을 받은 경우

다. 환수 절차

- 성남시(고용과)는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자로 환수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환수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 사유 및 환수내용(징수금액 및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문서로 환수 통보
- 환수 대상자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금을 지급한 성남시에 반환
- 환수 절차: 부정수급 확인 → 지원금액 환수 결정 → 환수 예정 통지 → 고지, 독촉

3. 체납관리

가. 체납관리

- 체납: 체납처분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독촉 및 체납처분: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나. 결손처분

- 미환수 건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음

Ⅳ. 서 식

- 【제1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
- 【제2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위임장
- 【제3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안내문
- 【제4호】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제5호】 고용·임금 확인서
- 【제6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결정 통지서
- 【제7호】 이의신청서
- 【제8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제9호】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제10호】 사용대차 확인서
- 【제11호】 실거주 확인서
- 【제12호】 전대차 관계 확인서
- 【제13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자 관리대장
- 【제14호】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제15호】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제16호】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 【제17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앞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2. 공동이용 행정정보명(4종)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수혜관련 자료 확인,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해 활용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직종,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 근로(사업)상태, 소득 및 재산현황(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소득 내역 포함),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기타: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4.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재산 조사 중복수혜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직종,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 근로여부, 소득 및 재산현황	5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제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 아래 확약인은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	-------------------------------------

【서식 제2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주소		
내 용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신청 ☐ 변경 ☐ 이의신청)의 위임		
수임자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폰)	
	주소		

위임자(본인)는 대리인에게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또는 변경,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확인사항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안내문

중복수혜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 있음	☐ 해당 없음
	- 국가형 긴급복지(생계)	☐ 있음	☐ 해당 없음
	- 경기도형 긴급복지(생계)	☐ 있음	☐ 해당 없음
	- 산재보험	☐ 있음	☐ 해당 없음
	- 실업급여	☐ 있음	☐ 해당 없음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절차 안내>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접수 ⇒ 자격요건 심사 ⇒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필 수 제출서류	①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소득·재산 조사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등 포함) ② (입원 및 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예시)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③ (근로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필수 ▶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제5호) 또는 경력·위촉·재직증명서 등 근로증빙서류 중 1부-필수 ④ (소득·재산 조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활동 및 소득 신고서(소득이 “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해당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⑤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사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유의사항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금 지급 후라도 사후조사 결과,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내 처리가 원칙이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소득·재산 조사, 근로 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내 처리합니다.

【서식 제4호】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로(사업) 활동 내역 (※ 입원·검진 전월 포함 3개월 간 이력 기재)	직장(사업장)명				연락처	
	직장(사업장)주소		(연락처:)			
	노동자	구 분	년 월	년 월	년 월	
		월별 근로일수(일)	일	일	일	일
		3개월 간 총 근로일수	총 일			
	사업자	사업장 유지기간	년 월 일 ~			
의료기관 이용 시 무급휴가 유무			입원기간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무급휴가(휴무) ☐ 하였다 ☐ 하지 않았다			
월 급 제			월 평균 급여: 원			
자 영 업			월 평균 소득: 원			
기 타			월 평균 소득: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근로(사업)활동 내역과 소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근로상태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

신청인	성명	김성남	생년월일	1990.01.01.	
	주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00 (00동)			
근로(사업) 활동 내역 (※ 입원·검진 전월 포함 3개월 간 이력 기재)	직장(사업장)명		○○편의점	연락처	031-000-0000
	직장(사업장)주소		성남시 수정구 ○○대로 123 (00동)		
	노동자	구분	26년 03월	26년 04월	26년 05월
		월별 근로일수(일)	15일	13일	10일
		3개월 간 총 근로일수	총 38일		
	사업자	사업장 유지기간	년 월 일 ~		
의료기관 이용 시 무급휴가 유무		입원기간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무급휴가(휴무) ☒ 하였다 ☐ 하지 않았다			
월급제		월 평균 급여:		원	
자영업		월 평균 소득:		원	
기타		월 평균 소득:		1,500,000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근로(사업)활동 내역과 소득을 신고합니다.

2026년 07월 10일

신고자: 김성남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근로상태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5호】

고용 · 임금 확인서

고용주 작성	피 고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용기간				
	근로내역 (※ 입원·검진 전월 포함 3개월 간 이력 기재)	구 분	년 월	년 월	년 월
		월별 근로일수(일)	일	일	일
		3개월 간 총 근로일수	총 일		
	의료기관 이용시 무급휴무 유무		입원기간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무급휴가(휴무) ☐ 하였다 ☐ 하지 않았다		

신청인 작성	소득내역	월 원 ※ 신청시점 현재 신청인 월 소득(일용근로자는 1년 월 평균소득 기재)
-----------	------	--

【 고용주 】	【 신청인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고용주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본인의 월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근로상태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고용 · 임금 확인서

고용주 작성	피 고 용 자	성 명	김 성 남		생년월일	1990.01.01.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00 (00동)			
	고용기간		2026. 1. 1. ~ 2026. 7월 현재			
	근로내역 (※ 입원·검진 전월 포함 3개월 간 이력 기재)	구 분	26 년 03 월	26 년 04 월	26 년 05 월	
		월별 근로일수(일)	15 일	13 일	10 일	
		3개월 간 총 근로일수	총 38 일			
의료기관 이용시 무급휴무 유무		입원기간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무급휴가(휴무) ■ 하였다 □ 하지 않았다				

신청인 작성	소득내역	월 1,500,000 원 ※ 신청시점 현재 신청인 월 소득(일용근로자는 1년 월 평균소득 기재)
-----------	------	--

【 고용주 】	【 신청인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07 월 10 일 사업장명: ○○편의점 사업장주소: 성남시 수정구 ○○대로 123 (○○동) 사업자등록번호: 111-22-333333 연락처: 031-000-0000 고용주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본인의 월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2026 년 07 월 10 일 신청인성명: 김 성 남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근로상태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결정 (☐ 선정 ☐ 미선정)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 폰)	
	주 소					
의료기관명						
입원기간 (공단 건강검진일)				질병명		
신청내용				지원내용		

[illegible]

이
가
다

성남시장

직인

- 33 -

【서식 제7호】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처 분 내 용		☐ 선정 ☐ 미선정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안 내	1.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결정 등에 관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2.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처분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지원대상자 승인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남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신청자 본인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 ①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결정 통지서[서식 제6호] 1부 ②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 확인) 1부 【 대리인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 ①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결정 통지서[서식 제6호] 1부 ②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1부 ③ 위임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1부 ④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 확인) 1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주 소	

이의신청일	
처분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처분 취소·변경 [] 기각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성남시 고용과(☎031-729-8734)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소속) 고 용 과 (성명)

성 남 시 장

직인

참고 사항	·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	---

【서식 제9호】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자 (납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 폰)	
환수결정금액	금	원		
환수사유				

귀하에게 지급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금에 대한 환수 결정 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고 용 과 (성명)

성 남 시 장

직인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31-729-8734)

【서식 제10호】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 (관계:)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 (관계:)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 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사용현황	☐ 신청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20 . . .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 (대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 제11호】 고시원, 여인숙 등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임차인	성 명	(※ 면적: m ²)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거주기간	20 . . . ~ 20 . . . (최소 1개월 기재)	
임대료	월 원(보증금: 원)	

위 임차인이 상기와 같이 실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 제12호】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전대차 관계 확인서

전 차 인(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택소재지			
사용현황	☐ 주택 전체	☐ 주택 일부	
사용인 부담액	월	원(보증금	원)

본인이 임대차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전차인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전 대 인(임 차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 제13호】 (엑셀서식)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자 관리대장

연번	구	동	접수 날짜	신청 회차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휴대폰)	구분 (근로유형)	가구원수	신청내역					심사 및 지급					계좌 번호	미지급 시 사유	환수 대상 (o,x)	비고
											병가구분	병가기간	일 수 (단위:일)	질병명	의료 기관명	심사 결과	지급 기간	지급금액 (단위:원)	금융 기관명	예금주				
연 번	구명 기재	동명 기재	접수 날짜 기재	차수 기재	성명 기재	생년 월일 기재	남/여	휴대폰 번호 기재	①일용근로자 ②노무제공자 ③기타근로자 ④사업소득자	소득·재산 조사시 해당 가구원수 기재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여부 기재	입원 또는 공단일반 건강검진 기간 기재	신청일수 기재	질병명 기재	의료 기관명 기재	지급 또는 부지급	지원금 지급 기간 기재	지급 금액 기재	지급 계좌 금융 기관명 기재	지급계좌 예금주명 기재	지급 계좌 번호 기재	미선정 사유 기재 ① 소득 미충족 ② 재산 미충족 ③ 생계급여(국민기초) 수혜자 ④ 생계급여(긴급복지) 수혜자 ⑤ 산재보험 수혜자 ⑥ 실업급여 수혜자 ⑦ 일자 부적정 ⑧ 질병 부적정 ⑨ 근로·영업 부적정 ⑩ 기타(사유 기재)		
1	00구	00동	2026 .11.1 .	1차	장미순	000000	여	000-00 00-000 0	①일용직근로 자	4	입원	3.1 ~3.5	5	근골격 계질환	00병원	지급	5	405.900	00 은행	장미순	0000 -000 0-00 0	-		
2	00구	00동	2026 .11. 13	2차	홍길동	000000	남	000-00 00-000 0	④사업소득자	3	입원	2.15	1	-	00병원	미지급	-	-	-	홍길동		① 소득 미충족		

【서식 제14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용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의 직종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사용을 인허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_시____분부터 ____시____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_____원
 - 상여금: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_____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_____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67조(근로계약) 이행)
10.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인)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가 구 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 가족관계 단절 시점 :

○ 가족관계 단절 사유 :

○ 신청인의 현재 생활 상태 :

가족관계 단절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향후 상기 신고사실이 허위,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분(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미선정, 지원금 환수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주소		
	신청사유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함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폰)
	주소		
지급 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1.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의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금 입금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범위: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리수령인(통장명의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별첨	1.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V. 참고자료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	--------------

2	Q & A
---	-------

3	참고법령
---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모두 “예” 에 해당될 경우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대상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 결정”

구 분		내 용	체 크															
성남시 주민등록		①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 주민등록자	☐ 예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②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유지 (임의계속가입자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불가)	☐ 예	☐ 아니오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2개 항목 중 1개)	입원	③-1.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 예	☐ 아니오														
	공 단 건강검진	③-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 예	☐ 아니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2개 항목 중 1개)	근 로 소득자	④-1.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	☐ 예	☐ 아니오														
	사 업 소득자	④-2.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 예	☐ 아니오														
소득 재산 기준 (2개 항목 모두충족)	소득	⑤-1. 신청자 및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table><tr><td>구분</td><td>1인가구</td><td>2인가구</td><td>3인가구</td><td>4인가구</td><td>5인가구</td><td>6인가구</td></tr><tr><td>120%</td><td>3,077,085</td><td>5,039,150</td><td>6,430,843</td><td>7,793,685</td><td>9,068,062</td><td>10,267,142</td></tr></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 예	☐ 아니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3,077,085	5,039,150	6,430,843	7,793,685	9,068,062	10,267,142												
	재산	⑤-2. 신청자 및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4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예	☐ 아니오														
중복수혜		⑥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⑦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⑧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경기도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⑨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계획이 없다.	☐ 예	☐ 아니오														
		⑩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예	☐ 아니오														
누적 수혜	연간	⑪ 입원(검진)으로 성남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연간 1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누적	⑫ 입원(검진)으로 성남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누적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기산시점: 사업시행일(2021.10.25.))	☐ 예	☐ 아니오														
무급휴가(휴무)		⑬ 입원(검진) 기간 동안 무급휴가(휴무)를 실시하였다.	☐ 예	☐ 아니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신청인(체크리스트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Q & A

Q1.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입원일·공단 일반건강검진일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 주민등록자’ 이면서, 입원기간·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로 자격을 유지하고,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소득자’ 는 24일 이상, ‘사업소득자’ 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Q2.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입원과 건강검진 최대 지원일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 A. 입원에 대한 지원가능일은 연간 13일 이내로 입원치료와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1일 포함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일(2021.10.25.)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누적 30일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30일 초과 시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연 1일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1) 2026년 입원치료 13일
예시2) 2026년 입원치료 12일, 건강검진 1일
예시3) 2024년 입원치료 13일, 2025년 입원치료 13일, 2026년 입원치료 4일, 건강검진 1일

Q3.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 A. 신청기간은 입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성남시청 고용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Q4. 최초 사업시행일 이전에 입원하였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A.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은 2021년 10월 25일자 사업 시행으로 이전의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5. 2025년도에 신청하여 지원 받은 사람이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신청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도별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연간 13일 이내(건강검진 포함), 사업시행일(2021.10.25.)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누적 30일 이내(30일 초과 시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연 1일 신청 가능) 지원으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해마다 다른 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6.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일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A. 신청서와 모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Q7. 신청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신청서와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은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Q8. 당일 입원했을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6시간 이상 입원하여 의료기관에서 입원으로 확인할 경우 가능합니다.

Q9. 공단 일반건강검진 재검진이나 치과검진 등 일반 건강검진의 일부만 받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지역가입자가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에서 기본검진으로 실시하는 1차 검진만 해당하며 그 외 검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성남시 주민등록에 대한 자격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11. 주소지는 성남시인데,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성남시 주민등록 기준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이며, 직장 소재지가 성남시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성남시 주민등록 기준은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로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12. 성남시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가구원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가구원으로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외국인 가구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제출할 경우에는 포함 가능합니다.

Q13.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서 신청자격을 여러 명이 갖추었다면 각각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신청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단, 가족구성원 중 부부 등 가구원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복e음에서는 한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1명을 먼저 신청 접수 후 종료되면 나머지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 접수 또는 심사 중일 경우, 심사 종료 후 행복e음 접수 가능)

Q14. 신청자 가구원 산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 가구원 기준은 신청일 시점으로 산정합니다. 입원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신청 시에는 기혼으로 신청 시점에서 배우자 등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포함하면 됩니다.

Q15. 신청자 본인의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속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16.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주는 남편이고 부인, 자녀 등 가족이 일할 경우, 부인이나 자녀가 입원 시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족끼리 운영 시에도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부인이나 자녀의 근로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 등이 부합될 경우,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17.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입원 시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근로자 본인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입원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18.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의 경우도 신청 자격이 될까요?

A. ‘임의계속가입자’ 도 지역가입자로 해당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지침 용어정리에서 ‘임의계속가입자’ 설명 참조)

Q19. 근로소득자를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로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로 확인 불가능할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제5호) 또는 증빙서류(노무제공자의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노무제공자 등의 경우,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시 가능
- 일용직 등의 경우, 급여 통장으로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시 가능
- 입원 또는 검진일 해당월의 근로내역도 근로일수로 산정 가능

Q20. 전월 3개월 근로 확인 시 1개월(예: 6월)은 사업자이고, 2개월(예: 7, 8월)은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단, 각각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1.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일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3개월 동안 실 근로일수가 24일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휴일에도 근로하였다면 근로일수로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Q22. 일자리를 얻지 못해 현재 소득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신청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면 현재 소득과는 관계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23.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자격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은 필수입니다.

Q24.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건도 지급되나요?

A.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입원도 지원 대상입니다.

Q25. 미용, 성형, 출산은 비대상이나 질병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해당 할까요?

A. 치료목적으로 질병명이 확인된 입원으로 신청 자격기준이 충족되고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예: 출산 전 고위험 산모 등)

Q26.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일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3개월 동안 실 근로일수가 24일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휴일에도 근로하였다면 근로일수로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Q27. 신청 시에는 사망자가 아니나 심사 중에 사망할 경우 지급 가능할까요?

A. 신청 시에 사망하지 않았으나 심사 중에 사망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28. 노동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노동자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노인일자리사업(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함) ② 퀵서비스 배송, 택배 등
- ③ 음식점에서 서빙이나 설거지 등 ④ 편의점, 카페 등 아르바이트
- ⑤ 가족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⑥ 종교 관련(목사, 신부, 승려 등)
- ⑦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 가능
- ⑧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등)로 유튜브 방송 등을 하는 경우

2.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① 가족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부모님·손자녀·조카 등 가족돌봄을 할 경우
- ② 국비지원사업으로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경우
- ③ 병역의무자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 중인 경우

Q29.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에서 월별로 소득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일용직근로자는 1년간 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여 소득을 적용합니다.

Q30. 타 사업 서비스 신청으로 최근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했을 경우라도 소득·재산 조사를 해야 할까요?

A. 타 사업 서비스 신청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것으로, 본 사업에서 신청이 아니므로 신청기준 및 절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31. 퇴원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신청할 경우 지원 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시기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여부, 근로(사업) 활동 사실 등의 기본 지원 자격 확인은 입원(검진) 실시 시점 기준입니다.

한편, 소득·재산 조사는 지원 신청 시점 기준이며, 그에 따른 조사 결과도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재산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Q3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재산 조사할 경우, 현재의 소득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느 시점의 소득을 반영하나요?

A. 소득·재산 조사는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공적자료의 소득·재산 반영을 원칙으로 하나, 행복e음에서 조회된 소득액이 신청자 현재 소득·재산 기준과 다르다고 하면서 신청자가 현재 시점으로 소득·재산 반영을 원할 경우, 신청자 본인이 공적서류(예: 소득금액증명 등)를 제출하여 소득금액 반영을 원할 경우에는 최신 소득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3. 재산이 일반재산만 적용되는데 혹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라도 대출금과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하는 건가요?

A. 일반재산만 적용하고 금융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라도 대출금과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상 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Q34. 신청자와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등은 어떤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A.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에 대한 주거용 재산 조사 시

- 자가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제출하여 확인 필요하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 제10호), 실거주 확인서(서식 제11호), 전대차 관계 확인서(서식 제12호) 중 1개 서류를 제출합니다.

Q35. 금융재산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기 조회된 금융재산은 반영하지 않나요?

A.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 조회된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36. 중복 수혜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복 수혜는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포함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수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추후 지급받은 경우도 해당 월과 중복으로 해당한다면 중복 처리함)

Q37. 성남시 자체 긴급구호 지원도 중복수혜로 보아야 하는지요?

A. 성남시 긴급구호 지원 사업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8. 대상 중복 수혜 제외에서 개인 실손보험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가 아닌 소득상실로 생계를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개인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혜택 여부는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 사업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Q39. 신청자가 다른 건으로 2차 신청 시 대상자격 및 소득·재산 조사 실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① 이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른 건으로 신청 시, 성남시 주민등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 등 지원 가능 대상 자격 재확인하나, 소득·재산 조사는 이전에 신청 시 조사된 내역으로 같음하여 생략 가능하나 가구원 변동 시에는 재조사합니다.
② 이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시, 성남시 주민등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 등 지원가능 대상자격 재확인하며, 소득·재산 조사도 재실시 합니다.

Q40. 소득 조사 시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행복e음에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시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항목’이 검색되면 입원 및 검진 시 급여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재보험 확인>

- 증빙서류: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 발급방법: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본인 확인 후 팩스 발급

<실업급여 확인>

- 증빙서류: 취업희망카드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Q41. 실업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중복여부를 조회하나요?

A. 실업급여 내역은 지급 첫 달에 한하여 일할 계산되므로 지급한 날짜와 입원기간,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Q42. 입원시기와 지급시기가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입원기간의 일자별 당해연도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25. 12. 27. ~ 2026. 1. 5.(10일) 입원했을 경우 2025년 지원 금액으로 5일, 2026년 지원 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Q43.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청 자격이 될까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복수혜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의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은 아니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